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 안 번 호	406

제안년월일 : 2011년 6월 30일
제 안 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장환진 의원 외 3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137호)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제362호)을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상위법인 「수도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수도요금 감면 근거와 부칙에 시행일 및 유효기간을 규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합리적으로 조례를 운용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가. 상위법인 「수도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인용조문을 개정함
(안 제29조제1항, 제35조제3항)

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수도요금 감면 근거와 부칙에 시행일 및 유효기간을 규정함
(안 제31조, 부칙 제1조~2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제35조제3항제3호 중 “「수도법」 제18조제2항”을 “「수도법」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는 2017년 12월 납기분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대안)
제29조(세대분할) ① 1주택 또는 1호에서 단일 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세대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하되, 세대수는 거주하는 방수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⑥ (생 략)	제29조(세대분할) ① ---------- ---------- ---------- ---------- ---------- ---------- **제28조제4항**---------- ------.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생 략) 1.~8. (생 략) **〈신 설〉** 9. (생 략)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 1.~8. (현행과 같음) **9.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 10. (현행과 같음)
제35조(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교부)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검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3. 수도용자재와 제품 등 검사 : 「수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제35조(검사의뢰 및 검사성적서 교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제14조제1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제9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31조제1항제9호는 2017년 12월 납기분까지 효력을 가진다.**